

# 공공시설사업소 정기감사 결과

##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9. 5. 8. ~ 5. 10.(3일간)
- 감사반 : 5명(감사팀장외 4명)
- 감사범위 : 2017년 5월 이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 계약, 예산집행, 물품관리등 적법 처리 여부
  - 각종 공사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등

## □ 감사결과

(단위 : 건)

일련 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10건	10	4	6	
1	도서관팀	관외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소홀	1	1		
2	추모공원팀 도서관팀	일상감사 미이행	1		1	
3	문예회관팀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1		1	
4	문예회관팀	설계용역 완성 검사 지연	1		1	
5	추모공원팀	공용차량 관리 부적절	1	1		
6	문예회관팀	일숙직근무 시간 미준수	1		1	
7	문예회관팀	광고업무 부적절	1		1	
8	문예회관팀 도서관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업무 부적절	1		1	
9	추모공원팀	사용허가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업무 소홀	1	1		
10	문예회관팀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1	1		

## 주요지적사례

### 관외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소홀

-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0조에 따라 도서 대출을 받은 자가 기간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독촉하여야 하고,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 정지 또는 변상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미반납도서에 대하여 문자전송 및 유선만으로 요청하는 등 도서회수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일상감사 미이행

- 「예산군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2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뢰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재료비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문예회관 주차장 화단에 이팝나무 식재 공사를 조경식재 공사로 시설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재료비로 집행한 사실한 사실이 있다.

### 설계용역 완성 검사 지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는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문예회관 공연장 및 별관 옥상 방수시설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 후 43일 경과 후 완성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절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관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 저비등 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차량 차량 설명서에 따르면 엔진오일은 10,000km 또는 12개월마다 점검·교체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관용차량 2대에 대해서 16.8.27, 17.7.22 이후에 엔진오일 점검 및 교체하지 않는 등 관용차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 ■ 숙직근무 시간 미준수

-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외 3시간을 근무후 귀가 근무자로 되어 있다.
- 고덕면에서는 총 2건 숙직근무시간 18:00~21:00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 ■ 광고업무 부적절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등의 공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10조 동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매체 광고를 하려면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사업소에는 광고를 신문사와 직접 계약하여 광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기간제근로자 보수 업무 부적절

-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6조 및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단가 조정 알림(기획담당관-2719, 2018. 9.13), (기획담당관-1787, 2019.2.7.)에 따라 단순사무원 66,890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단순사무원에 대하여 66,890원이 아닌 66,960원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사용허가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추모공원식당 허가조건』 제6조에는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해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서 미리 납부한 때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2017.2.23.~2019.11.25. 기간 동안 공유재산(추모공원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같은 건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납부해왔으며, 이중가입으로 인해 127,86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 ▣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물품구

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1.5%,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2.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총 5건 39,841,420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족하게 매입하고, 미매입등 총 505,000원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